

행정심판 재결에 따른 건설기술인 행정처분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24조 위반 혐의에 따른 우리 청의 업무정지 처분과 관련하여, 「행정심판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대상자

당사자(건설기술자)		당초처분내용	변경처분내용
성명	생년월일		
신희종	69.12.01.	업무정지 6개월 (2023. 10. 10. ~ 2024. 4. 9.)	취소 (청구인 송달일: '24.6.17.)

2. 기타

- 위 공고문과 관련한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행정처분 담당자(02-2110-672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